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해설



金 晚 鎬

〈환 경 처·대기관리과장〉

## 목 차

1. 서언
2. 주요내용
  - 1) 관할 사업장 변동
  - 2) 자진 신고제도
  - 3)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에 대한 벌칙강화
  - 4) 배출부과금
  - 5) 무허가시설에 대한 강제 이행수단
  - 6)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 7) 행정처분
3. 결론

### 1. 서언

'90년 7월 14일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91년 2월 2일 이에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확대, 강화되었고 강화된 기준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상

당한 방지시설을 보강,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환경처에서는 대도시와 공업단지내의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청정연료인 LNG를 확대공급하고 있고, 저유황유의 공급 등으로 오염도를 점차 개선하고 있으며, 공단 및 공장 밀집지역내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와 기술지도, 연돌자동측정기에 의한 상시 감독 등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분진저감대책으로 분진을 다량배출하는 연탄, 철강, 시멘트 제조업소의 비산먼지 발생원에 방진망, 방진벽 등을 설치토록하고, 도로청소를 진공청소차로 점차 대체토록 하면서 자동차 매연을 줄이고 각종 공사장의 분진발생을 억제하는 등 분진저감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각종 대기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서는 선진외국과 비교할 때 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된 분야가 많아 이번에 주로 배출 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 하였다.

앞으로 해당 업소에서는 강화된 각종 기준에 적

합하도록 시설을 보강, 개선 하여야 할 것이다.

## 2. 주요내용

### 1) 관할 사업장 변동

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별표에 의하면 시·도와 지방환경청간의 관할 사업장이 명확히 구분이 되었으며 이제는 관할 사업장의 허가(변경허가포함)업무, 자진신고업무, 업소의 단속, 이에따른 행정처분업무가 일원화 되게 되었다. 과거에는 공단외의 대형 업소중 단속은 지방환경청에서 하고 허가 업무와 행정처분은 시·도에서 함으로써 사업자로서는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이제는 한 기관에서 전체 업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서 행정의 신속, 편의함을 갖게 되었다.

이중 농공지구는 공업단지 범위에서 제외되나 공동방지사설로 운영시는 지방 환경청 관할 사업장에 속하게 된다.

또한 공업단지외의 특정 유해물질배출 사업장은 허가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며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소, 금속 제련, 도금업소 등이 해당된다.

#### 관할사업장구분

구 분	공 업 단 지 내	공 업 단 지 외
지방환경청	○현행 전국 주요 54개 공단 내 사업장 - 부산사상공단, 대구3공단, 성서공단을 포함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공동방지사설 설치 사업장 ○분진 다량배출업소(철강, 시멘트 제조업)
시·도	○해당없음	○위업소를 제외한 전체사업장

### 2) 자진신고제도

법, 시행령 제4조(배출시설의 비정상 운영에 관한 자진신고 등)에 의하면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 가동 할 수 없을 경우 즉, 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 변경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 방지시설의 결함 또는 고장으로 수리를 위하여 부득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하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자진신고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 동안 몇 년 동안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실제로 사업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자 스

스로 업소를 자율관리토록 하는 환경처의 시책이 정착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자진신고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으며 만일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자진신고 미 이행시에는 첫째 법 위반으로 100만원(벌칙제58조)이하의 벌금과 배출부과금의 부과금을 납부 하여야 하고 위반 회수별 부과계수(5%가산)를 적용 받게 된다. 이상과 같이 방지시설의 결함이나 고장을 발견 하면 즉시 자진신고하고 수리를 해야지 그냥 방치 또는 무시하고 가동을 하다가 적발을 당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 3)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에 대한 벌칙 강화

법 제15조① 항에 의하면 모든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배출허용기준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한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이라 함은 ① 배출시설을 가동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②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부식, 마모 등으로 오염물질 누출을 방지한 경우, ③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목적으로 「뎀퍼」 「바이 패스닥트」 등을 설치한 경우, ④ 방지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기구류가 제성능이 발휘되지 아니할 경우 등은 비정상 가동으로 간주하게 된다.

만일 비정상 가동하다가 적발이 되면 고발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행정처분은 2년동안 회수가 누계되어 ①과 ③의 경우는 1차는 조업정지 10일, 2차는 조업정지 30일, 3차는 허가취소되며, ②와 ④의 경우는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허가취소된다.

이러한 행정처분 이외에 고발도 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제55조 벌칙)도 받게 된다. 이 번에 벌칙도 대폭 강화, 인상되었다. 과거에는 같은 위반사항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이다.

### 4) 배출부과금

대기 배출 부과금은 우선 대상 물질인 아황산

가스, 먼지, 불소, 악취 등 4개 오염물질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등 6개항이 추가되어 10개 항의 오염물질로 확대 되었다.

이번 배출부과금의 특징은 기본 부과금이 새로이 추가 되어 1종인 업소는 400만원, 2종 300만원, 3종은 200만원 4종 100만원, 5종은 50만원이 배출부과금을 부과 할때 마다 추가해서 부과하게 된다. 또한 오염물질 kg당 부과금액도 먼지는 500원에서 770원, 불소는 8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하였고 새로이 설정되는 일반 오염물질은 1,600원에서 6,000원, 특정유해물질은 7,400원정도로 인상해서 정하였다. 개정된 배출 부과금은 전반적으로 2-3배 강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본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자진신고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5) 무허가 시설에 대한 강제 이행수단

지금까지는 무허가시설(일부 또는 전체 시설)을 적발하였을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가능한 지역의 업소는 허가가 될때까지 조업정지 하고 허가가 불가능 할 때는 폐쇄조치하였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조업을 하고 있을때 폐쇄 명령만 반복하고 고발만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조치를 관계 기관장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6)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과거 배출시설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로서는 허가대상시설인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이 많았으나 제정된 배출시설은 해당시설을 규모별로 명시하고 이에 포함되는 시설도 구분하여 현장에서 확인하기 쉽게 되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허가증상의 배출시설은 새로이 제정된 시설로 변경 기재하여야 하고, 새로이 배출시설로 규정되는 시설이 현재 설치, 가동중일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허가기관에 허가증을 제출,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정된 배출허용기준도 대폭 강화되었다. 이번

에 제정된 배출허용기준의 특징은 장기(4년-8년) 예고제로서 1999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현재 선진국의 배출수준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예고 배출허용기준을 명시 함으로서 사업장은 강화된 기준에 적합 하도록 미리 준비 할 수 있고 이중방지시설 설치를 피할 수 있어 경제적인 도움을 얻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은 총 26개 대상 기준 중에 14개 항목을 조정 하였고 평균 20~80%를 강화 하였으며 발전소인 경우는 '99년에 처음으로 사업장에 탈황시설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에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경제적인 능력과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등을 검토 하였으나 경제적인 능력으로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기간만 충분히 준다면 설치능력은 충분히 있으며 기술수준 또한 우리나라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모든 사업장은 '91, 8, 1일 까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방지시설을 개선, 보완해야 하며 만일 기일이내에 개선이 불가능할 시는 시행일(91,2,2일)로 부터 2개월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가스상 물질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현행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 기준		
			1994.12.31일까지	1995.1.1일~1998.12.31일	1999.1.1일 이후
암모니아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250ppm	150ppm이하	100ppm이하	50ppm이하
	나. 안료 및 염료제조시설		100ppm이하	70ppm이하	70ppm이하
	다. 기타 시설		200ppm이하	200ppm이하	100ppm이하
일 산 화 탄 소	가. 발전시설 또는 일반 보일러	350ppm	350(4)ppm이하	350(4)ppm이하	350(4)ppm이하
	(1) 액체연료 사용시설		400(6)ppm이하	400(6)ppm이하	400(6)ppm이하
	(2) 고체연료 사용시설		600(12)ppm이하	600(12)ppm이하	600(12)ppm이하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 보일러		600ppm	600(12)ppm이하	600(12)ppm이하
	다. 시멘트 제조시설중 소성로		600ppm	600(12)ppm이하	600(12)ppm이하
	라. 기타 시설		1,000ppm	700ppm이하	700ppm이하
염화수소	가. 염산 제조시설	50ppm	25ppm이하	15ppm이하	6ppm이하
	나. 인산 제조시설	50ppm	5ppm이하	2ppm이하	0.6ppm이하

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행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 기준		
			1994년12월31일	1995년1월1일~	1999년1월1일
			까지	1998년12월31일	이후
다. 화학비료 제조시설 라.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중산처리시설 마.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바.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시설중 용융·용해시설 사. 기타 시설	〃	15ppm이하	10ppm이하	10ppm이하	
	〃	10ppm이하	5ppm이하	2ppm이하	
	100ppm	80(12)ppm이하	60(12)ppm이하	50(12)ppm이하	
	25ppm	5ppm이하	2ppm이하	0.6ppm이하	
	25ppm	10ppm이하	6ppm이하	6ppm이하	
염소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00ppm	80(12)ppm이하	60(12)ppm이하	
	나. 기타 시설	10ppm	10ppm이하	10ppm이하	
황산화물(SO <sub>2</sub> 로서)	가. 일반보일러	850ppm	850(4)ppm이하	540(4)ppm이하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저황유 사용지역				
	(나) 기타 지역	1,400ppm	1,950(4)ppm이하	1,950(4)ppm이하	
	(2) 고체연료 사용시설 (액체연료 혼합시설포함)	700ppm	500(6)ppm이하	250(6)ppm이하	
	(가) 고체연료 사용규제 지역				
	(나) 기타지역	1,200ppm	1,200(6)ppm이하	700(6)ppm이하	
	1)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700ppm	700(6)ppm이하	500(6)ppm이하	
	나. 발전시설	1,200ppm	1,200(4)ppm이하	1,200(4)ppm이하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설비용량 500MW미만				
	(나) 설비용량 500MW이상				
	(2) 고체연료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포함)				
	(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	1,700ppm	1,650(6)ppm이하	1,650(6)ppm이하	
	1) 부산광역시·강원도지역				
	2) 기타 지역	1,200ppm	1,200(6)ppm이하	270(6)ppm이하	
	(나)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700ppm	700(6)ppm이하	500(6)ppm이하	
	다.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 중 백소로, 용광로, 용선로	800ppm	650ppm이하	650ppm이하	
	라. 황산제조시설	700ppm	500(8)ppm이하	200(8)ppm이하	
	(1) 유황연소 황산제조시설				

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행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 기준		
			1994년12월31일	1995년1월1일~	1999년1월1일
			까지	1998년12월31일	이후
다. 화학비료 제조시설중 혼합·반응·정제 및 농축시설 바. 석유정제시설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폐가스소각시설 사. 크로스 제조시설 아.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자. 기타 시설	(2) 기타 황산제조시설	700ppm	500(8)ppm이하	200(8)ppm이하	
	마. 화학비료 제조시설중 혼합·반응·정제 및 농축시설	800ppm	350(4)ppm이하	350(4)ppm이하	
	바. 석유정제시설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폐가스소각시설	800ppm	800(4)ppm이하	500(4)ppm이하	
	사. 크로스 제조시설	800ppm	300(7)ppm이하	150(7)ppm이하	
	아.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800ppm	300(12)ppm이하	300(12)ppm이하	
	자. 기타 시설	800ppm	800ppm이하	500ppm이하	
	결 소 산화물(NO <sub>2</sub> 로서)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250ppm	250(4)ppm이하	250(4)ppm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350ppm	350(6)ppm이하	350(6)ppm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발전시설에 한한다)	-	1,200(13)ppm이하	950(13)ppm이하
		1) 발전용 내연기관	-	400ppm이하	400ppm이하
2) 기타 발전시설	300ppm	200ppm이하	200ppm이하		
이 황 화 탄 소	가. 인건사 제조시설	120ppm	100ppm이하	100ppm이하	
	나. 기타 시설	120ppm	30ppm이하	30ppm이하	
포 롬 알데히드	모든 배출시설	50ppm	20ppm이하	20ppm이하	
	황화수소	30ppm	10ppm이하	6ppm이하	
불소화물(F로서)	가. 석유정제시설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폐가스소각시설	30ppm	10ppm이하	6ppm이하	
	나. 펄프제조시설 다. 기타 시설	30ppm	10ppm이하 15ppm이하	5ppm이하 15ppm이하	
시 안 화 수 소	가. 대기·자기·토기·구조물도·내화물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 또는 소성시설	10ppm	5ppm이하	3ppm이하	
	나. 기타 시설	10ppm	10ppm이하	10ppm이하	
브 롬 화 합 물(Br로서)	모든 배출시설	10ppm	5ppm이하	5ppm이하	
	모든 배출시설	200ppm	30ppm이하	50ppm이하	
벤 질 화 합 물(C <sub>6</sub> H <sub>6</sub> 로서)	모든 배출시설	10ppm	5ppm이하	5ppm이하	
	모든 배출시설	10ppm	10ppm이하	10ppm이하	

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행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 기준		
			1994년12월31일 까지	1995년1월1일~ 1998년12월31일	1999년1월1일 이후
수은	모든 배출시설	-	5mg/Sm <sup>3</sup> 이하	5mg/Sm <sup>3</sup> 이하	5mg/Sm <sup>3</sup> 이하
화합물 (Hg 로사)					
비소	모든 배출시설	3ppm	3ppm이하	3ppm이하	3ppm이하
화합물 (As로사)					

비고 : 1.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sub>2</sub>의 %)를 말한다.

2. 황산화물의 자외선기타시정중 액체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의 경우에는 일반보일러의 기준을 적용한다.

## 2. 입자상 물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행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 기준		
			1994년12월31일 까지	1995년1월1일~ 1998년12월31일	1999년1월1일 이후
먼지	가. 발전시설 또는 일반보일러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배출가스량이 200,000m <sup>3</sup> /시간이상의 시설	150mg	100(4)mg/Sm <sup>3</sup> 이하	60(4)mg/Sm <sup>3</sup> 이하	40(4)mg/Sm <sup>3</sup> 이하
	(나) 배출가스량이 30,000m <sup>3</sup> /시간이상 200,000m <sup>3</sup> /시간미만의 시설	200mg	150(4)mg/Sm <sup>3</sup> 이하	100(4)mg/Sm <sup>3</sup> 이하	50(4)mg/Sm <sup>3</sup> 이하
	(다) 배출가스량이 6,000m <sup>3</sup> /시간이상 30,000m <sup>3</sup> /시간미만의 시설	250mg	200(4)mg/Sm <sup>3</sup> 이하	150(4)mg/Sm <sup>3</sup> 이하	100(4)mg/Sm <sup>3</sup> 이하
	(라) 배출가스량이 6,000m <sup>3</sup> /시간미만의 시설	350mg	300(4)mg/Sm <sup>3</sup> 이하	200(4)mg/Sm <sup>3</sup> 이하	150(4)mg/Sm <sup>3</sup> 이하
	2) 고체연료 사용시설 (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가) 배출가스량이 30,000m <sup>3</sup> /시간이상의 시설	250mg	250(6)mg/Sm <sup>3</sup> 이하	100(6)mg/Sm <sup>3</sup> 이하	50(6)mg/Sm <sup>3</sup> 이하
	(나) 배출가스량이 6,000m <sup>3</sup> /시간이상 30,000m <sup>3</sup> /시간미만의 시설	300mg	250(6)mg/Sm <sup>3</sup> 이하	150(6)mg/Sm <sup>3</sup> 이하	50(6)mg/Sm <sup>3</sup> 이하
	(다) 배출가스량이 6,000m <sup>3</sup> /시간미만의 시설	350mg	300(6)mg/Sm <sup>3</sup> 이하	200(6)mg/Sm <sup>3</sup> 이하	150(6)mg/Sm <sup>3</sup> 이하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 배출가스량이 40,000m <sup>3</sup> /시간이상의 시설	150mg	100(12)mg/Sm <sup>3</sup> 이하	80(12)mg/Sm <sup>3</sup> 이하	80(12)mg/Sm <sup>3</sup> 이하
	(2) 배출가스량이 40,000m <sup>3</sup> /시간미만의 시설	-	200(12)mg/Sm <sup>3</sup> 이하	100(12)mg/Sm <sup>3</sup> 이하	100(12)mg/Sm <sup>3</sup> 이하
	다.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중				
	(1) 전기아크로(유도로 포함)	-	30mg/Sm <sup>3</sup> 이하	20mg/Sm <sup>3</sup> 이하	10mg/Sm <sup>3</sup> 이하

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행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 기준		
			1994년12월31일 까지	1995년1월1일~ 1998년12월31일	1999년1월1일 이후
	(2) 용광로, 용선로, 배소로	200mg	70mg/Sm <sup>3</sup> 이하	50mg/Sm <sup>3</sup> 이하	50mg/Sm <sup>3</sup> 이하
	(3) 소결로	〃	200mg/Sm <sup>3</sup> 이하	70mg/Sm <sup>3</sup> 이하	50mg/Sm <sup>3</sup> 이하
	(4) 가열로	〃	100(11)mg/Sm <sup>3</sup> 이하	100(11)mg/Sm <sup>3</sup> 이하	70(11)mg/Sm <sup>3</sup> 이하
	라. 화학비료제조시설 또는 인산 및 화합물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200mg	70(10)mg/Sm <sup>3</sup> 이하	70(10)mg/Sm <sup>3</sup> 이하	50(10)mg/Sm <sup>3</sup> 이하
	마.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중 가열시설	200mg	70(4)mg/Sm <sup>3</sup> 이하	50(4)mg/Sm <sup>3</sup> 이하	50(4)mg/Sm <sup>3</sup> 이하
	바. 코크스 제조시설	200mg	100(7)mg/Sm <sup>3</sup> 이하	100(7)mg/Sm <sup>3</sup> 이하	100(7)mg/Sm <sup>3</sup> 이하
	사. 아스콘 제조시설	200mg	100(10)mg/Sm <sup>3</sup> 이하	100(10)mg/Sm <sup>3</sup> 이하	100(10)mg/Sm <sup>3</sup> 이하
	아. 석유정제시설중				
	(1) 추매제정시설	200mg	70(6)mg/Sm <sup>3</sup> 이하	70(6)mg/Sm <sup>3</sup> 이하	70(6)mg/Sm <sup>3</sup> 이하
	(2) 탈황시설	〃	100(6)mg/Sm <sup>3</sup> 이하	50(6)mg/Sm <sup>3</sup> 이하	50(6)mg/Sm <sup>3</sup> 이하
	(3) 가열시설	〃	70(4)mg/Sm <sup>3</sup> 이하	50(4)mg/Sm <sup>3</sup> 이하	50(4)mg/Sm <sup>3</sup> 이하
	자.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중				
	(1)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	150mg	100(13)mg/Sm <sup>3</sup> 이하	70(13)mg/Sm <sup>3</sup> 이하	50(13)mg/Sm <sup>3</sup> 이하
	(2) 기타 시설	〃	100mg/Sm <sup>3</sup> 이하	70mg/Sm <sup>3</sup> 이하	50mg/Sm <sup>3</sup> 이하
	차. 도기·자기·토기·구조 점토·내화물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 소성 또는 냉각 시설	150mg	100(16)mg/Sm <sup>3</sup> 이하	100(16)mg/Sm <sup>3</sup> 이하	70(16)mg/Sm <sup>3</sup> 이하
	카. 시멘트·석회 및 프라스 트 제조시설중				
	(1) 소성시설 및 건조시설	300mg	200(13)mg/Sm <sup>3</sup> 이하	100(13)mg/Sm <sup>3</sup> 이하	50(13)mg/Sm <sup>3</sup> 이하
	(2) 냉각시설	〃	100mg/Sm <sup>3</sup> 이하	50mg/Sm <sup>3</sup> 이하	50mg/Sm <sup>3</sup> 이하
	타. 석면제품 제조가공 시설 중				
	(1) 방사·침면·탈탄시설	-	30mg/Sm <sup>3</sup> 이하	30mg/Sm <sup>3</sup> 이하	30mg/Sm <sup>3</sup> 이하
	(2) 기타 시설	-	100mg/Sm <sup>3</sup> 이하	100mg/Sm <sup>3</sup> 이하	100mg/Sm <sup>3</sup> 이하
	파. 기타 시설	300mg	120mg/Sm <sup>3</sup> 이하	120mg/Sm <sup>3</sup> 이하	120mg/Sm <sup>3</sup> 이하

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행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 기준		
			1994년12월31일 까지	1995년1월1일~ 1998년12월31일	1999년1월1일 이 후
카드뮴 화합물 (Cd 로서)	모든 배출시설	1.0mg	1.0mg/Sm <sup>3</sup> 이하	1.0mg/Sm <sup>3</sup> 이하	1.0mg/Sm <sup>3</sup> 이하
납화합물 (Pb 로서)	가.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 시설중 용융·용해로, 용 광로 및 정련시설	30mg	20mg/Sm <sup>3</sup> 이하	20mg/Sm <sup>3</sup> 이하	10mg/Sm <sup>3</sup> 이하
	나. 기타 시설	20mg	10mg/Sm <sup>3</sup> 이하	10mg/Sm <sup>3</sup> 이하	5mg/Sm <sup>3</sup> 이하
크롬화합물 (Cr 로서)	모든 배출시설	1.0mg	1.0mg/Sm <sup>3</sup> 이하	1.0mg/Sm <sup>3</sup> 이하	1.0mg/Sm <sup>3</sup> 이하
구리화합물 (Cu 로서)	가. 구리제련시설	30mg	20mg/Sm <sup>3</sup> 이하	20mg/Sm <sup>3</sup> 이하	20mg/Sm <sup>3</sup> 이하
	나. 기타 시설	20mg	10mg/Sm <sup>3</sup> 이하	10mg/Sm <sup>3</sup> 이하	10mg/Sm <sup>3</sup> 이하
니켈및그 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20mg	20mg/Sm <sup>3</sup> 이하	20mg/Sm <sup>3</sup> 이하	20mg/Sm <sup>3</sup> 이하
아연 화합물 (Zn 로서)	가. 금속제련·전기로 및 소 각시설	50mg	30mg/Sm <sup>3</sup> 이하	30mg/Sm <sup>3</sup> 이하	30mg/Sm <sup>3</sup> 이하
	나. 기타 시설	10mg	10mg/Sm <sup>3</sup> 이하	10mg/Sm <sup>3</sup> 이하	10mg/Sm <sup>3</sup> 이하
비산먼지	모든 배출시설	2mg	1.5mg/Sm <sup>3</sup> 이하	1.0mg/Sm <sup>3</sup> 이하	0.5mg/Sm <sup>3</sup> 이하
매연	모든 배출시설	2도	링겔만비탁표 2도이하	링겔만비탁표 2도이하	링겔만비탁표 2도이하

- 비고 : 1.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sub>2</sub>의 %)를 말한다.  
 2. 보일러중 일반보일러, 소각보일러 및 소각시설에 적용되는 배출가스량 산정은 시설용량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고장등을 대비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의 시설용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먼지의 파의 기타 시설중 액체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 가열시설의 경우에는 일반보일러의 기준을 적용한다.

### 3. 악취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관능법 및 식염수법으로 측정하여 관능법은 2도이하. 식염수법은 30이하일 것.

### 7) 행정처분

행정처분내용도 현실에 맞췄음 개정하였다. 즉, 위반행위는 사업장 단위별로 그리고 위반행위 내용별로 지난 1년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인 경우는 지난 2년간의 위반행위를 합산해서 처리하게 된다

예로서 방지시설 비정상인 경우는 개별 위반내

용에 따라 행정처분이 합산이 되어 배출시설 가동중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는 1차에 조업정지 10일, 2차는 조업정지 30일, 3차는 허가취소가 되는데 이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한 최근 2년간 몇회 위반인지를 계산해서 결정하게 된다.

위반회수가 누적되어 일단 허가취소가 되면 최소한 재허가를 받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해야 함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며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내의 사업장은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할 것이다.

###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 )은 과거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하지 아니한 다 음과 같은 경우	법제20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가) 배출시설 가동중에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나) 배출시설이나 방지 시설의 부식·마모등 이 심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 경우		경고	조업정지 10일	허가취소	
(다) 공기조절장치(덤펀), 가지 배출관(바이패스덕트) 등을 설치하여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라)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를 항상 계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판정을 받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	법제16조 법제17조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비속 등으로 인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제20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조업정지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사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방지사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		조업정지 (상동)	허가취소 (상동)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사업장의 위치에 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법제18조	이전명령 (상동)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 당해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나) 당해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법제21조	사용금지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상동)			
(6)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할 때	법제20조	조업정지 (상동)	허가취소 (상동)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경우 2) 무허가 배출시설의 경우 (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은 자가 이전명령기간내에 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20조 법제21조 법제20조 법제20조	경 고 (상동) 경고 (상동) 허가취소 (상동) 경고 (상동)	허가취소 (상동) 폐쇄명령 (상동) 허가취소 (허가취소)		
(7)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판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배출 시설을 가동하여 동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업을 한 경우 (8)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9) 다음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받은 사항중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기간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20조 법제17조 법제20조 법제20조	경 고 (상동) 개선명령 (상동) 경 고 (상동) 경 고 (상동)	허가취소 (상동) 조업정지 (개선명령) 허가취소 (조업정지)		조업정지 10일 (관리인 변경명령)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1)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가)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가측정 횟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자가측정을 허위로 기록하였거나, 기록부를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20조	경 고 (상동)	경 고 (상동)	조업정지 10일 (관리인 변경명령)	
(1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 임명 등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가) 배출시설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 배출시설관리인의 자격기준이 미달된 경우 (다) 배출시설관리인의 비상근 또는 타업 무종사	법제20조 법제24조	경 고 (상동)	배출시설 관리인 변경명령 (상동)	배출시설 관리인 변경명령 (상동)	

- 비고 1. 개선명령·조업정지 및 이전명령기간은 당해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정해지, 제26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6)의 (나) 및 (7)의 경우 1차 경고를 한 때에는 경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금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에서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2), (6)의 (가) 및 (8)은 당해 시설의 개선완료예정일, (5)와 (가)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득예정일, (3)은 방지시설 설치완료예정일, (6)의 (라)는 조치명령 이행 완료예정일까지로 한다. 다만, 개선완료예정일·배출시설 설치허가 취득예정일, 방지시설 설치완료예정일 및 조치명령 이행 완료예정일이 실제 완료일과 다를 때에는 변경처분을 하여야 한다.
4. (1)의 (가), (나), (다), (라)의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합산한다.

### 3. 결론

지난 91, 2, 2일 제정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내용은 어느때 보다도 전반적으로 강화 되었다.

특히 배출허용기준은 예고제를 도입하여 '95, 1, 1일과 '99, 1, 1일에 시행될 기준을 사전에 명시해 줌으로써 사업자는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고 이중 투자를 방지 할 수 있는 등 잇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환경처와 시·도청은 사업장을 함께 관리하여 오던 것을 분할하여 일원화함으로써 공장업소는 허가, 단속, 행정처분 업무를 함께 처리하게 되어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환경처는 전국에 약 1만 4천여개의 대기 배출업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형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울산, 온산공단지역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고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 및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는 연돌자동장치를 부착토록 하여 「온라인」화 하여 관리 하고 있다. 또한, 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시멘트, 철강제조업소에 대해서는 비산먼지발생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토록하여 먼지 배출을 감소 시켰으며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축 공사장, 지하철 공사장 등에 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후 공사를 하도록 하는 등 오염물질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방지시설 설치비용이 부족한 업체에는 방지기금을 마련하여 용자를 해주고 기술지도반을 구성해서 기술지도를 해주는 등 사업장 스스로 방지 시설을 정상운영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업소는 방지시설에 투자가 피 및 정상가동을 소홀히 하는 업소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더 이상 오염물질을 부적정 처리하도록 방지 할 수 없는 상태에 까지 왔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법이 강화됨으로써 더욱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우리의 환경을 깨끗이 보전, 유지해서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갖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